



제 564호 2023. 6. 29(목)

입법예고

제2023-2916호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506
제2023-2929호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35512
	입법예고	
제2023-2950호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35514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 시

제2023-191호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35551
제2023-192호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5553
제2023-193호	나전2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35554
제2023-195호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5556
제2023-196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35558
제2023-197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35560
제2023-199호	화목하수처리구역 회현처리분구 차집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도의	35562
	설치인가 고시	

알 림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등록사항 공개	35564
공고 제2023-3호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고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책무 신설 및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정비
- 중장기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의 반영 및 실행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함

3. 주요내용

-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용어 신설(안 제3조제6호)
-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책무 신설(안 제4조제3항)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삭제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7조)
-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정비(안 제9조)
- 정책제안 및 제안된 정책의 실행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임기 개정(안 제14조제3항)
: 임기 1년 ⇒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1조)
: 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해촉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기업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김해시청
- 2) 담당부서 : 기업혁신과(청년지원팀)
(전화:055-330-2904, FAX:055-722-170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개정안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고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책무 신설 및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정비
- 중장기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의 반영 및 실행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 협의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함

2. 주요내용

-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용어 신설(안 제3조제6호)
-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책무 신설(안 제4조제3항)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삭제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7조)
-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정비(안 제9조)
- 정책제안 및 제안된 정책의 실행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임기 개정(안 제14조제3항)
: 임기 1년 ⇒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1조)
: 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해촉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 예산관련: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 : 감사관
 - 규제사전심사 : 법무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
- 입법예고: 2023. 06. 29. ~ 07. 19.(20일 이상)
 - 입법예고 시 의견:
- 조례·규칙심의회: 2023. . .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김해시에서”를 “「청년기본법」에 따라 김해시에서”로 한다.

제3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호 및 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위원의 위촉 해제)”를“(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해당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1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으로, “있다”를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청년정책협의체의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 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1. ~ 5. (생 략)</p> <p>〈신 설〉</p> <p>제4조(책무) ①·② (생략)</p> <p>〈신 설〉</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 style="padding-left: 20px;">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 진목표</p> <p style="padding-left: 40px;">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p> <p style="padding-left: 40px;">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p>	<p>제1조(목적) -- 「청년기본법」에 따라 김해시에서----- ----- ----- -----.</p> <p>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1. ~ 5.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 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p> <p>제4조(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③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시 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삭 제〉</p>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성별·연령별·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생략)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4조(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 ⑨ (생략)

제7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

---- 해당위원을 해촉-----

-----.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 2021. 2. 10. 김해시의회 의원 발의로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되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부 반영한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 따라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가. 이 폐지조례안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농식품유통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50941)/경남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전하동)
김해시농업기술센터
- 2)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공공급식팀)
(전화 : 055-350-4102, FAX:055-722-0764, E-Mail : morri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폐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김해시 규칙 제 호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3. 6. 29. ~ 7. 19. (20일간)
3. 개정이유
 - 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 확대
 -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당초 100억원)까지 지원
 - 나.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 지원 조항 신설
 - 2년 거주 시 가족 세대원 1명당 100만원의 이주정착 지원금 지원
 - 다. 의생명기업 지원기준 완화
 - 신규상시고용인원 10명/20명/25명을 5명/10명/15명으로 완화
4.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참조 : 투자유치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 2)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 (투자정책팀)
 - 전화 : 055-330-8786, FAX : 055-722-4353, e메일 : hyb0212@korea.kr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투자유치단 투자정책팀(☎055-330-87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성명(단체명/대표자)

2.

주 소

전 화 번 호

3. 의견

4. 기타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함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 확대(안 제6조)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당초 100억원)까지 지원
-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
 - 고용보조금 최대 10억원까지, 건물임차료 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규모 확대(안 제7조)
 -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30억원(당초 5억원)까지 확대
-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을 때 가족 세대원에게 이주정착지원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
-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 지원 추가(안 제11조)
 -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과 기업의 초기자본 부담완화를 위하여 토지 임대료 지원 가능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3, 제7조
- 예산관련 : 비용추계서 첨부
- 부서협의 : 2023. 6월
 - 부패영향분석 : 감사관
 - 규제개혁심사 : 법무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
- 입법예고 : 2023. 6 ~ 7월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2023. 7 ~ 8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8월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의2호,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신설한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7.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7의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5.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16.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7.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8.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9.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20.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4조에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을 추가한다.

제5조 제1항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대·중·소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대·중·소규모”를 “대규모”로 하고,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1항 중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를 “관내에”로 하고, “5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① 시장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이전·신설·국내복귀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 세대원에게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업 대표는 공장등록일(또는 개업일) 후 해당 직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1회로 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임대용지 공급”을 “임대용지 등 공급”으로 하고, 조문에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를 추가한다.

제22조 제2항 제2호의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을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신 설></p> <p style="margin-left: 20px;"><신 설></p> <p>2. ~ 6. (생략)</p> <p>7.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중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골프장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신 설></p> <p>8. ~ 14.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신 설></p> <p style="margin-left: 20px;"><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가. 신설기업: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p> <p style="margin-left: 20px;">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p> <p>2. ~ 6. (현행과 같음)</p> <p>7.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p> <p>7의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p> <p>8. ~ 14. (현행과 같음)</p> <p>15.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p> <p>16.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17.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p>
<p><신설></p>	<p>18.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p>
<p><신설></p>	<p>19.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p>
<p><신설></p> <p>제4조(수도권기업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① 시장은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 또는 최대 50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20.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p> <p>제4조(수도권기업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 -----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 ----- ----- ----- -----</p> <p>제5조(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① ----- ----- ----- ----- ----- 100억원 ----- -----.</p>

현행	개정안
<p>제6조(대·중·소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u>대·중·소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u>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u>대규모</u> ----- -----<u>200억원</u>----- ----- 다만,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7조(신·증설기업 지원) ① 시장은 <u>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u>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시장은 <u>관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u>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7조(신·증설기업 지원) ①-----<u>관내에</u>----- ----- -----<u>30억원</u>----- ----- 제9조의2(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① 시장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이전·신설·국내복귀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 세대원에게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업대표는 공장등록일(또는 개업일) 후 해당 직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1회로 한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u>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u></p>	<p>제11조(임대용지 등 공급)----- ----- ----- 판단되는 경우에는 <u>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u> -----.</p>
<p>제22조(투자유치진흥기금)① (생략) ② (생략) 2. <u>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u> 3. ~ 5. (생략)</p>	<p>제22조(투자유치진흥기금)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u>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u> 3. ~ 5. (현행과 같음)</p>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함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후관리기간 기산 시점 변경(안 제2조)
 - (현행)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 (개정)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 별도 규정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별표 8)
-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액 조정(안 제5조 ~ 제9조)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11조, 별표 2의2)
 - (현행) 설비투자비 최대 100억원 → (개정) 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최대 100억원
-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별표 9)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에 대한 상세 기준 명시
 - 대규모투자(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의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로 120억원 ~ 200억원 지원
- 신·중설기업 지원기준 정비(안 제12조, 별표 2의4)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에 대한 상세 기준 명시
 - 설비투자금액의 10%로 10억원 ~ 30억원 지원
- 의생명기업 지원기준 완화로 지원범위 확대(별표2)
 - 지원기준인 신규상시고용인원 10명/20명/25명을 5명/10명/15명으로 완화
-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지원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년이상 거주하였을 때 가족 세대원 1명당 1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
-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 지원 조항 신설(안 제16조의3)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에 대한 상세 기준 명시
 -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이내,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
- 준용 규정 추가(안 제3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3, 제7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9조

○ 예산관련 : 비용추계서 첨부

○ 부서협의 : 2023. 6월

- 부패영향분석 : 감사관
- 규제개혁심사 : 법무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

○ 입법예고 : 2023. 6 ~ 7월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2023. 7 ~ 8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8월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0호에서 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2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제15호(중전의 제17호)중 “통보”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11.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8과 같다.

제5조의 제1항 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5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1항 중 “3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7조의 제1항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1항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30억원”으로, “사업개시일”을 “착공신고일”로 한다.

제9조의 제1항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대·중·소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의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6조의1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9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 2의4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단, 국내에서 연속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5와 같이 하며,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2호의 “2년”을 “1년”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 등)① 조례제9조의2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 대표자는 총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신청내역(별지 제9호 서식)과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을 위해 미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도 포함한다.

② 조례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장(사업) 등록을 완료하고 운영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신청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금은 가족 세대원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임대료 지원)① 조례 제11조 및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관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6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융자금 절차 등) 제1항 제3호의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준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2의4 및 별표 2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및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

[별지 제8호서식]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총괄 신청서 (제16조의2 관련)

신청인	상 호 또 는 명 칭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전 화 F A X	
공 장 소 재 지	(산업단지명 :)			
공 장 설 립 일		업 종 (분류번호)	()	
상시고용인원	총 인 원	신규채용인원	기존공장이전인원	
	명	명	명	
지원금 신청 내역				
전 입 인 원 수 (A + B) /세대수	전 입 근 로 자 수 (A)	동 반 가 족 수 (B)		
명 / 세대	명	명		
지원금 신청 금액				
지 원 금 유 형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금액	백만원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1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1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김해시장 귀하				
〈갓출 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9호서식) 1부.				
2. 공장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1부.				

[별지 제9호서식]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 (제16조의2 관련)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입사일	전입일	가족수 (본인 포함)	신청 금액 (백만원)	비고
1								
2								
3								
.								
.								
.								
계								

위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0호서식]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개인별 신청서

(제16조의2 관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택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회사명		근무부서	
직장전화번호				

지원금 신청 내역

신청인원(본인포함)	명	전입일자	
계좌번호(은행명)	(은행명 :)		

지원금 신청 금액

지원금유형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금액	백만원
-------	-------------	------	-----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해시장 귀하

<갯출 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각 1부.

[별표 2]

의생명기업 지원 기준

조 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투자금액의 10% 이내	3억원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4억원
투자금액 4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6억원

※ 투자금액의 범위 : 부지매입비 + 건축비(거주용제외) + 시설장비구입비

수소·나노융합·항공기부품·드론산업 및 식료품제조업 지원 기준

구 분	조 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시설보조금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10억원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15억원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20억원
고용보조금	신규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초과 1명당 월100만원이내 12개월이내	3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교육훈련실시	초과 1명당 월100만원이내 12개월이내	2억원

관광사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기준

구 분	조 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시설보조금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10억원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15억원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20억원
고용보조금	신규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초과 1명당 월50만원이내 12개월이내	3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신규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교육훈련실시	초과 1명당 월50만원이내 12개월이내	2억원

[별표 2의2]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3)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 (\text{직전3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6} \div 6$

*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손익}}{\text{매출액}}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3}$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매출액증가율} \times 1)]}{3}$

* 당기 매출액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 - \text{전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 전기 매출액증가율 = $\frac{\text{전기 매출액} - \text{전전기 매출액}}{\text{전전기 매출액}}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text{최근 3년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times 1)]}{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전기말 총자산} - \text{전전기말 총자산}}{\text{전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4.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주업종 : 제조업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text{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5.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점 수
15% 미만	10
15% 이상 ~ 20% 미만	8
20% 이상 ~ 25% 미만	6
25% 이상 ~ 30% 미만	4
30% 초과	2

* 최근 결산일기준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유동리스부채+사채+장기차입금+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6.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20명 이상 30명 미만	4
40명 이상 50명 미만	8	10명 이상 20명 미만	2
30명 이상 40명 미만	6		

7.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10
BBB- 이상	3, 4 등급	8
BB- 이상	5 등급	6
B0 이상	6 등급	4
B0 미만	7등급 이하	2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대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확인

8.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9. 사업성 분석

사업성	점 수	사업성	점 수
20% < IRR	5	5% < IRR ≤ 10%	2
15% < IRR ≤ 20%	4	IRR ≤ 5%	1
10% < IRR ≤ 15%	3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지한 사업성분석 산출 프로그램으로 산출

10.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5	2.5년 이내	2
1.5년 이내	4	3년 이내	1
2년 이내	3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조금신청서 상 착공일부터 기간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신규 고용하면 5점 가점

12.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2의3]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설비 투자금액	부지 매입비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부지 매입비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부지 매입비 ×10%	100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별표 2의4]

신설증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5호 관련)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평균매출액	점 수
100억원 이상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	30억원 미만	4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12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2.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점수
30명 이상	20

3.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CCC- 이상	8
BB- 이상	16	CCC-미만	4
B0 이상	12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text{최근 3년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times 1)]}{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전기말 총자산} - \text{전전기말 총자산}}{\text{전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5.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주업종: 제조업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text{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6.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점수	평 가 척 도	점수
15% 미만	10	25% 이상 ~ 30% 미만	4
15% 이상 ~ 20% 미만	8	30% 초과	2
20% 이상 ~ 25% 미만	6		

$$* \text{최근 결산일기준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 \text{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리스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 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7.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20억원당 2점

8.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5년 이내	10	2.5년 이내	6
2년 이내	8	3년 이내	4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조금신청서 상 착공일부터 기산

9.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점수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	1명당 0.5점

※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 인원이 경상남도 출생지를 둔 청년 신규고용인 경우 1명당 0.5점 추가 가점 부여
 - 청년 이란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5세~34세를 의미

10.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2의5]

신설·증설기업 지원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 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신설·증설 기업지원	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 10%	10	설비투자금액 15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1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15	설비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20	설비투자금액 25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2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25	설비투자금액 30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30	

※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추가고용 시 추가고용 1인당 2,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별표 5]

정산금액 산정기준

구 분	산정 방식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정산금액 = 보조금액 × (1 - 투자금액 미달률(고용인원 미달률))</p> <p>* 투자금액 미달률 = $\frac{\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제 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p> <p>* 고용인원 미달률 = $\frac{\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text{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p> </div> <p>※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p>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및 신설·증설 기업 지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정산금액 = 보조금액 × (1 - $\frac{\text{투자금액 미달률} + \text{고용인원 미달률}}{2}$)</p> <p>* 투자금액 미달률 = $\frac{\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제 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p> <p>* 고용인원 미달률 = $\frac{\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text{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p> </div> <p>※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p>

[별표 8]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억원)

구분	지원기준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설비 보조금	이전 보조금	비고
기업 투자 촉진 지구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	3	2	2	2	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15	10	5	10	5	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20	15	7	20	7	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30	20	10	30	10	

※ 지원범위 등은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름

[별표 9]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제11조의2제2항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바·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20	투자금액 1,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2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140	투자금액 1,4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4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60	투자금액 1,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6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180	투자금액 1,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8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6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1.~ 9.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14. (생 략)</p> <p>15. (생 략)</p> <p>16. (생 략)</p> <p>17.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6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기업에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p> <p>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생 략)</p> <p>1. ~ 4.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제5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6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2조(정의) 1.~ 9.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10.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11.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u></p> <p>12. (현행 제14호와 같음)</p> <p>13. (현행 제15호와 같음)</p> <p>14. (현행 제16호와 같음)</p> <p>15. ----- ----- ----- <u>신청</u> -----.</p> <p>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8과 같다.</u></p> <p>제5조(입지보조금) ① ----- ----- -- <u>70퍼센트</u> ----- <u>30억원</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고용보조금) ① ----- ----- ----- ----- -- <u>20억원</u>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3.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1. <u>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같은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요건에 해당할 것</u></p> <p>2. <u>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 부터 3년 이내일 것</u></p> <p>3. <u>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 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에서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u></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3. <u>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u></p> <p>4. <u>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 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의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u></p> <p>② <u>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u></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③ <u>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u>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u></p> <p>⑤ <u>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⑥ (생략)</p> <p><신설></p>	<p>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p>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신·증설기업 지원) ① (생 략)</p> <p>1. (생 략)</p> <p>2. (생 략)</p> <p>3. (생 략)</p> <p>4. (생 략)</p> <p>5.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제12조(신·증설기업 지원) ① <u>조례 제7조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u></p> <p>1. <u>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2. <u>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3. <u>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u></p> <p>4. <u>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u></p> <p>5. <u>별표 2의4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단, 국내에서 연속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5와 같이 하며,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u></p> <p>③ <u>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6조(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① (생략)</p> <p>1. (생략)</p> <p>2. 국내에서 연속으로 <u>2년</u>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p> <p>3. ~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신설></p>	<p>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산이 후에 지급할 수 있다.</p> <p>제16조(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1. <u>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 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u> 다만, 부동산산업(매매,중개,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u>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2. ----- 1년 -----</p>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2(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 등)① <u>조례제9조의2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 대표자는 총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신청내역(별지 제9호 서식)과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붙여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을 위해 미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도 포함한다.</u></p> <p>② <u>조례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장(사업) 등록을 완료하고 운영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u></p> <p>③ <u>신청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금은 가족 세대원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16조의3(임대료지원)① 조례제11조 및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관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p>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p> <p>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4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p> <p>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2조(기금의 용자 대상 등) ① (생략)</p> <p>1. ~ 2. (생략)</p> <p>3. 용자 한도액은 <u>50억원</u>으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31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에 따른다.</p>	<p>제22조(기금의 용자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100억원</u>-----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31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준용한다.</p>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어방동 997-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결정(㎡)	시행면적(㎡)		시행규모	비 고
		기정	변경		
근린공원	520,458	15,506	15,412	반려견 놀이터 및 주차장	최초결정일 1986.10.10.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용도별		
	기정	변경	편의시설(주차장)	기타시설(반려견 놀이터)	
				기정	변경
면적(㎡)	15,506	15,412	4,566	10,940	10,846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ㄱ 기정 : 김해시장(도시계획과장)
ㄴ 변경 : 김해시장(공원녹지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6. 사업기간 : 2020. 06. 26. ~ 2024. 06. 25.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
 8. 실시계획(변경) 신청사유
 -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신청.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김해시 여방동	997-2	도	14,378	97	김해시					기정
		997-12	도	97	97	김해시					변경
2	“	984-31	전	1,298	1,298	국	기획재정부				기정
		984-31	전	1,298	1,298	김해시					변경
3	“	986	원	164,583	3,220	김해시					기정
3-1	“	986-2	원	2,189	2,189	김해시					변경
3-2	“	986-3	원	746	746	김해시					
3-3	“	986-4	원	135	135	김해시					
4	“	984-43	전	216	216	국	기획재정부				기정
		984-43	전	216	216	김해시					변경
5	“	984-44	전	192	192	국	기획재정부				기정
		984-44	전	192	192	김해시					변경
6	“	984-46	전	959	959	국	기획재정부				기정
		984-46	전	959	959	김해시					변경
7	“	984-35	전	915	584	국	기획재정부				기정
		984-64	전	585	585	김해시					변경
8	“	984-48	임	3,836	30	국	산림청				기정
		984-48	임	3,836	-	국	산림청				변경
9	“	984-40	전	113	35	김해시					변경없음
10	“	984-65	전	171	171	김해시					변경없음
11	“	산2-85	임	3,542	3,451	김해시					기정
		산2-85	임	3,542	3,510	김해시					변경
12	“	984-38	전	1,150	1,150	김해시					변경없음
13	“	984-56	임	130	130	김해시					변경없음
14	“	984-37	답	284	284	김해시					변경없음
15	“	984-2	답	2,083	2,083	국	기획재정부				기정
		984-2	답	2,083	2,083	김해시					변경
16	“	984-23	전	1,632	1,606	김해시					기정
		984-23	전	1,632	1,632	김해시					변경
합계				195,482	15,506						기정
				15,522	15,412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055-330-359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6. 29.

김 해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8	12~14.5	국지 도로	338	소로 2-704	소로 3-44	일반 도로	-	2022. 2.11.	
변경	중로	3	68	12~14.5	국지 도로	338	소로 2-704	소로 3-44	일반 도로	-	2022. 2.11.	비탈면 등 포함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68 호선	중로 3-68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변경 - 위치 : 내동 126번지일원 - 연장 : 338m (변경없음) - 폭원 : 12m~14.5m(변경없음) - 면적 : 4,126㎡→ 5,692㎡ 증)1,5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작성 결과에 따라 지형 사정으로 인한 편입이 불가피한 비탈면 등을 시설 부지로 편입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관련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전2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2-382호(2022. 12. 23.)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된 나전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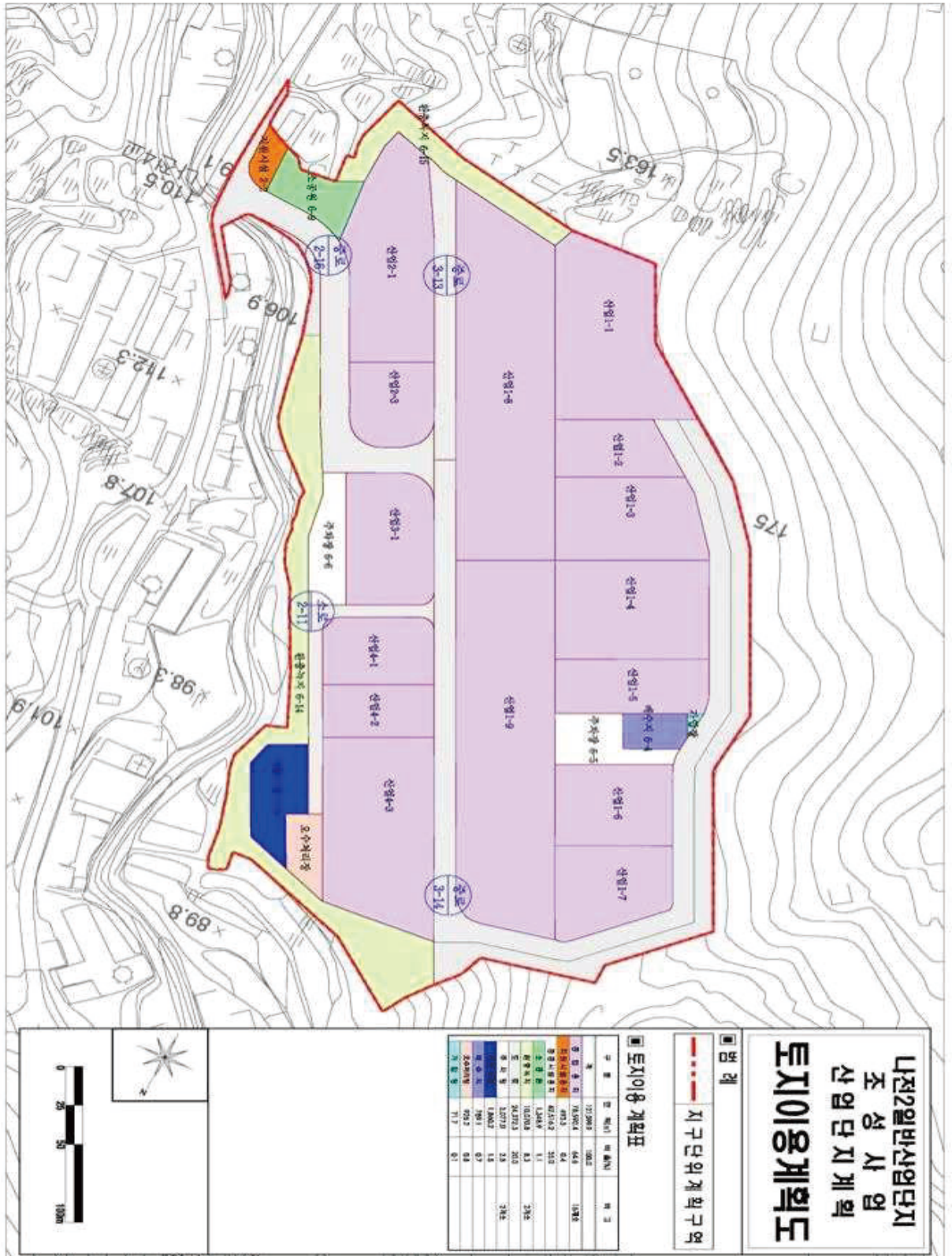
2023년 6월 29일

김 해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나전2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당초: 2011년 6월 2일 ~ 2023년 06월 30일
변경: 2011년 6월 2일 ~ 2023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당초: 시행자 ○ 성 명 : 가교산업(주) 대표이사 박호근
(주)이지스 대표이사 김봉교
 - 변경: 시행자 ○ 성 명 : (주)이지스 대표이사 김봉교**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채원조달계획(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11. 에너지사용계획 : 해당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13.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변경없음)
14.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1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2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 : 해당없음

2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동 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금광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m ²)	금회 시행규모(m ²)		비고
		기정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103,020	98,650 (건축 : 474.24m ²)	103,020 (건축 : 474.24m ²)	김해시 고시 제2020-89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광개발(주) 대표 유선주
 - 주 소 : 김해시 주촌면 김해대로 1538번길 142
5. 사업기간
 - 기 정 : 2005. 03. 15. ~ 2022. 12. 31.
 - 변 경 : 2005. 03. 15.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사유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금회 시행면적 추가 및 사업기간 연장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4)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외종류 및 내용		
1	주촌면 원지리	34-9	장	2,240	2,240	김0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생로13-*(장전동)					
2	주촌면 원지리	34-10	장	2,474	2,474	김0개0 (주)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					
3	주촌면 원지리	34-16	임	2,473	2,473	유0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25, 000동 ****호					
						유00	부산 금정구 금생로13-*(장전동)					
4	주촌면 원지리	34-17	임	4,245	103	유0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25, 000동 ****호					
						유00	부산 금정구 금생로13-*(장전동)					
5	주촌면 원지리	34-18	임	1,945	1,945	김00	부산 금정구 금생로13-*(장전동)					
6	주촌면 원지리	34-19	임	318	300	김00	부산 금정구 금생로13-*(장전동)					
7	주촌면 원지리	34-20	임	3,094	3,094	김00	부산 금정구 금생로13-*(장전동)					
8	주촌면 원지리	산68	임	63,579	2,725	김0개0 (주)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				기정	
	주촌면 원지리	산68	임	63,579	2,816	김0개0 (주)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				변경	
9	주촌면 원지리	산68-1	임	11,296	1,754	김0개0 (주)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					
10	주촌면 원지리	산69-1	임	69,520	5,821	김0개0 (주)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				기정	
	주촌면 원지리	산69-1	임	69,520	10,100	김0개0 (주)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				변경	
11	주촌면 원지리	산75	임	111,377	64,812	김0개0 (주)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					
12	주촌면 원지리	산77	임	10,909	10,909	김0개0 (주)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					
합 계(기정)						98,650						기정
합 계(변경)						103,020						변경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1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이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시설		금회시행			비고
	폭	연장	폭	연장	면적	
중로 1-21호선	22m	110m	22m	110m	2,593㎡	김해시 고시 제2017-87호 (2017.3.2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번지)
 - 주 소 : 김해시장(도시개발과장)
5. 사업기간
 - 당 초 : 2017.7.28. ~ 2021.12.31.
 - 변 경 : 2017.7.28. ~ 2023.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불임
7. 실시계획(변경) 사유
 - 준공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4)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주촌면 천곡리	1150-14	답	1,163	25	공	경상남도				
2	주촌면 천곡리	1150-15	답	2,111	524	공	경상남도				
3	주촌면 천곡리	1150-8	답	449	129	공	경상남도				
4	주촌면 천곡리	1177-3	천	7	6	국	국토교통부				
5	주촌면 천곡리	1176-1	천	569	1	국	국토교통부				
6	주촌면 천곡리	1256	구	1,738	46	국	농림축산식품 부				
7	주촌면 천곡리	1178-1	천	1,369	721	국	국토교통부				
8	주촌면 천곡리	1175-2	천	4,602	49	국	국토교통부				
9	주촌면 천곡리	1180	천	2,215	372	공	경상남도				
10	주촌면 천곡리	1398-1	구	491	242	국	농림축산식품 부				
11	주촌면 천곡리	1398-2	구	113	106	국	농림축산식품 부				
12	주촌면 천곡리	1300-5	천	1,426	372	국	국토교통부				
계				16,253	2,593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18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이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면적(m ²)	
중로 2-1호선	703	15~18	322	6	1,953	김해시 고시 제2019-238호 (2019.09.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도시개발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5. 사업기간
 - 기정 : 2020. 1. 23. ~ 2022. 1. 22.
 - 변경 : 2020. 1. 23.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
7. 실시계획(변경) 사유
 - 준공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지적합병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4)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의종류 및 내용	
당초	1	주촌면 천곡리	1181-3	천	326	326	국토교통부					
	2	주촌면 천곡리	1182-6	천	311	311	김해시					
	3	주촌면 천곡리	1182-3	제	1	1	김해시					
	4	주촌면 천곡리	1183-5	제	166	166	국토교통부					
	5	주촌면 천곡리	1183-6	답	12	12	국토교통부					
	6	주촌면 천곡리	1184-3	제	8	8	국토교통부					
	7	주촌면 천곡리	1300-14	천	240	240	국토교통부					
	8	주촌면 천곡리	1300-15	천	85	85	국토교통부					
	9	주촌면 천곡리	1303-4	구	19	19	국토교통부					
	10	주촌면 천곡리	1398-14	구	163	163	국토교통부					
	11	주촌면 천곡리	1398-15	구	29	29	국토교통부					
	12	주촌면 천곡리	1398-16	구	86	86	국토교통부					
	13	주촌면 천곡리	1398-17	답	118	118	국토교통부					
	14	주촌면 천곡리	1398-12	제	389	389	김해시					
소 계		14필지			1,953	1,953						
변경	1	주촌면 천곡리	1181-3	도	1,953	1,953	국토교통부					
	소 계		1필지			1,953	1,953					

김해시 고시 제2023-199호

화목하수처리구역 회현처리분구 차집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김 해 시 장

1. 인가내용

사 업 의 목 적		도시개발사업 및 신규아파트 신축 등 인구증가로 인해 기존 하수관로 통수단면 부족구간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수 이송·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에 그 목적이 있음.		
시 설 의 명 칭		화목하수처리구역 회현처리분구 차집관로		
사업시행자	주 소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성 명	김해시장		
사업시행지	위 치	김해시 전하동 36-2번지 일원(삼계서회아파트~전하중계펌프장)		
	처리면적	6.592km ²		
처 리 용 량		64,975m ³ /일	시 설 계 획	하수관로 신설 L= 6.429km
처 리 구 역		화목하수처리구역		
사 업 시 행 기 간		2023. 6. ~ 2027. 7.		

※ 인가와 관련한 관계도서 열람기관 : 김해시 하수과(055-330-3964)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시 설 명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대장상의 면적(m ²)	편 입 면적(m ²)	소 유 자	
	군, 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도시계획도로	삼계동	1519-3	도	8,151.6	221.7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삼계동	1519-1	도	43,142.7	47.8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삼계동	1519-12	천	30,989.0	21.4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삼계동	1519-5	도	8,617.7	3.5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삼계동	1519-6	도	6,578.3	3.0		김해시
공 원	삼계동	1412	공	5,492.5	144.6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삼계동	1519-35	도	152.7	8.8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삼계동	1519-33	도	34.0	1.5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삼계동	1519-36	도	62.5	6.5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삼계동	1519-14	도	6,061.7	282.3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삼계동	1519-19	도	6,387.5	414.7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삼계동	1519-25	도	4,269.8	34.4		김해시
지 방 하 천	삼계동	1519-18	천	32,232.4	54.2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삼계동	1519-29	도	4,293.5	293.5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삼계동	1519-31	도	3,056.8	28.7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구산동	1072-3	도	9,284.8	474.3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구산동	1072-1	도	32,232.8	500.9		김해시
녹 지	구산동	1072-2	공	5,412.0	7.2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구산동	1072-4	도	2,449.6	172.0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내동	1191	도	6,738.8	128.6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내동	1197	도	57.0	6.7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내동	1037-7	천	383.0	18.0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내동	1038	도	1,275.0	15.4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내동	106-14	유	8,053.0	271.3		농림축산식품부
도시계획도로	내동	105-2	도	1,222.0	50.2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내동	104-2	도	166.0	4.4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내동	101-10	도	1,532.0	82.1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내동	101-12	도	552.0	31.2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내동	1149	도	55,176.1	1,313.6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외동	1295	도	26,241.3	910.3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전하동	36-2	도	268.0	256.6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전하동	23-4	전	17.0	3.0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전하동	1252-11	도	4,848.8	111.8		김해시
지 방 하 천	전하동	1232-9	천	30.0	4.7		국토교통부
지 방 하 천	전하동	1232-4	천	2,894.0	22.4		국토교통부
지 방 하 천	전하동	1232	천	47,360.0	22.7		국토교통부
지 방 하 천	봉황동	480	천	38,758.0	79.1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봉황동	995	도	1,058.5	5.8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봉황동	1010	도	2,664.4	233.7		김해시
도시계획도로	봉황동	970	도	830.6	67.2		김해시
공 원	봉황동	969	공	839.9	13.5		김해시
중계펌프장	봉황동	81-12	잡	8,002.0	15.5		김해시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3-3호

재산 등록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김 해 시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최초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소속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직위	사장	최기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1,110,000	
본인	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5블록트리폴시티 건물 84.89㎡		725,000 (725,000)	
본인	다가구주택(전세(입차)권)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신세계빌 대지 285.00㎡ 중 0.00㎡ 건물 475.40㎡ 중 39.60㎡		5,000	
배우자	아파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한라비발디 건물 84.93㎡		380,000 (38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8,094	
본인	자동차	2013년식 말리부 배기량(2,390cc)		8,950 (8,950)	
본인	자동차	2019년식 SM6 배기량(1,998cc)		14,550 (14,550)	
본인	자동차	2021년식 아반떼 배기량(1,600cc)		144 (144)	
차녀	자동차	2021년식 아반떼 배기량(1,600cc)		14,450 (14,450)	
▶ 예금(소계)				215,984	
본인		(주)KB손해보험 9,956, (주)KEB하나은행 24, 국민은행 1,413, 농협은행 5, 대신증권 5,296, 삼성생명보험 9,016, 삼성화재해상보험 959, 우리은행 18,439		45,108	
배우자		(주)KB손해보험 5,106, 국민은행 7,584, 농협생명보험 13,650, 농협손해보험 4,500, 농협은행 27, 농협중앙회 27,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2,359, 삼성생명보험 26,128, 삼성증권 178,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112, 우체국 3,564, 유안타증권 3		93,238	

모		국민은행 38,804	38,804	
차녀		(주)KEB하나은행 35,754, 국민은행 3,022, 농협중앙회 5, 삼성증권 53	38,834	
▶ 증권(소계)			3,929	
배우자	상장주식	LG화학 2주, NAVER 7주, 삼성전자우 15주	3,606	
차녀	상장주식	삼성전자우 6주	323	
▶ 채무(소계)			412,750	
본인	금융채무	경남은행 32,750	32,750	
본인	건물임대 채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5블록트리폴시티 임대보증금	380,000	
총 계			955,257	